

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▶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『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▶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▶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▶ 상품명 : 외화정기예금
- ▶ 상품특징 : 3년 이내 월단위 또는 일단위로 만기지정 가능한 예금이며, 만기시 자동갱신과 계약기간 내 자유적립도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**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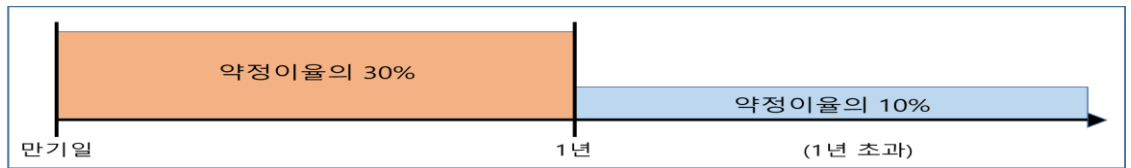
(2025.06.17 현재, 단위 : 연, 세전)

구 분	내 용
가입대상	▪ 제한없음
상품유형	▪ 외화정기예금
거래방법	▪ 신규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 ▪ 해지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
가입금액	▪ 미화 1 불 상당액 이상
계약기간	▪ 1 개월 이상 36 개월 이내(일단위 지정가능)(3년 초과는 개별 문의)
가입통화	▪ 미국달러화(USD), 일본엔화(JPY), 유로화(EUR), 영국파운드화(GBP), 스위스프랑화(CHF), 호주달러화(AUD), 캐나다달러화(CAD), 중국위안화(CNY) (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)
이자지급시기	▪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
원금 및 이자 지급관련 제한	▪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▪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
기본이율	▪ 연 3.86180%(USD, 거주자, 만기일시지급식, 12개월) ▪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외화정기예금 기본이율 적용

만기후이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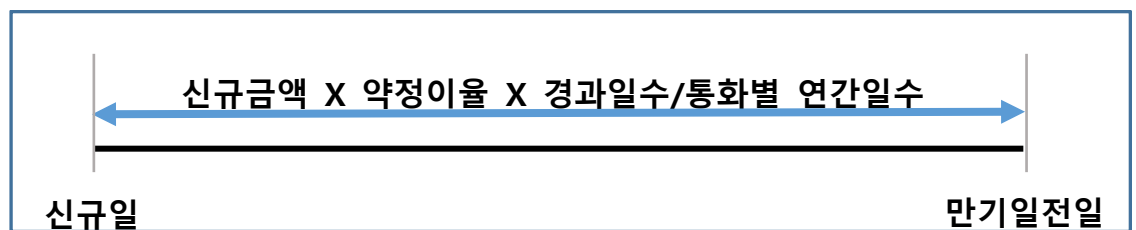
-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

경과기간	이율
만기후 1년 이내	약정이율 X 30%
만기후 1년 초과	약정이율 X 10%



만기이자 산출근거

-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
- 이자계산 산식
 $\text{신규금액} \times \text{약정이율} \times \text{경과일수} / \text{통화별 연간일수} [360(\text{또는 } 365)]$



(통화별 연간일수 : 일본엔화(JPY)와 영국파운드화(GBP)는 365 일, 그 외 통화는 360 일로 계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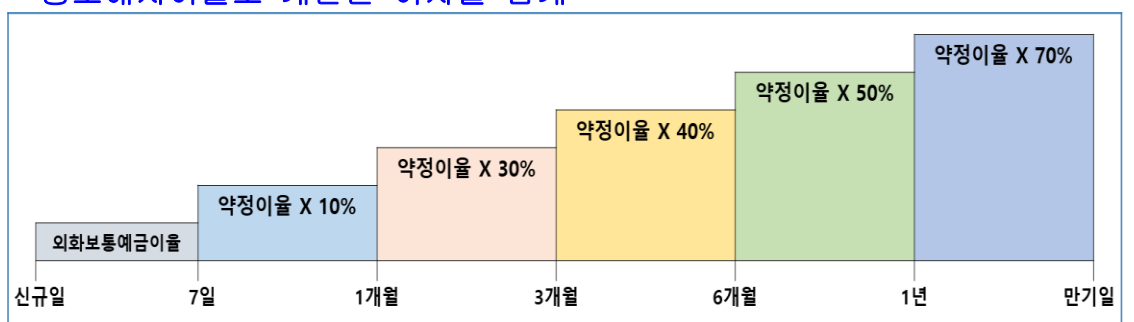
중도해지이율

-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적용
-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에 비해 회전식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

예치기간	이율
7일 미만	통화별 외화보통예금이율
7일 이상 1개월 미만	약정이율의 10%
1개월 이상 3개월 미만	약정이율의 30%
3개월 이상 6개월 미만	약정이율의 40%
6개월 이상 1년 미만	약정이율의 50%
1년 이상	약정이율의 70%

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

-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



자동갱신

- 예금주 요청 시 신규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에서 1,2,3,6개월 단위로 자동갱신 처리
- 자동갱신 시 자동갱신일의 고시이율을 약정이율로 적용
- 자동갱신된 예금의 원금은 갱신일 현재 입금액과 지급이자를 더한 금액임

계약해지방법	▪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	
연계 ▪ 제휴 서비스 내용	▪ 해당사항 없음	
예금자보호여부	해당 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 억원까지” 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세제혜택	불 가	▪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.
재예치	불 가	▪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.
분할인출	불 가	▪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.
양도 및 담보제공	가 능	▪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.
자료열람 요구권	▪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▪ 은행은 법령, 제 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
위법계약해지권	▪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▪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	
휴면예금 및 출연	▪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“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”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▪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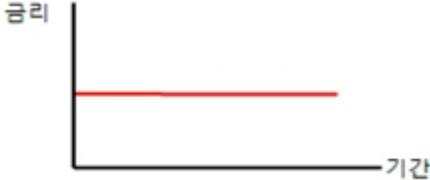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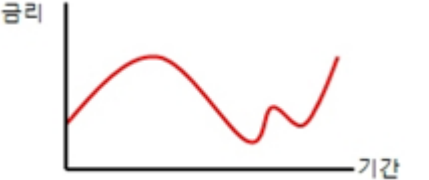


3

유의 사항

- ▶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▶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(신규입금 포함)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(송금 보내실 때 환율)을 적용합니다.
- ▶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(송금 받으실 때 환율)로 합니다.
- ▶ **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
- ▶ **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
- ▶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

구 분	고정금리	변동금리
운용형태		
특 정	■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	■ 일정주기(3,6 개월 등) 마다 예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
장 점	■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	■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
단 점	■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	■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

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6200, 1544-62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busanbank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<https://www.fcsc.kr>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 어	내 용
압 류	▪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총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▪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▪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 연	▪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▪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기간	▪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
문의사항 및 민원상담	영업점	당행 홈페이지 '영업점 찾기' 참조	BNK 부산은행
	고객센터	1544-6200/1588-6200	
	인터넷 홈페이지	www.busanbank.co.kr	
분쟁조정	금융감독원	국번없이 1332	
	e-금융민원센터	www.fcsc.kr	
상품 개발부서	외환사업부	051-661-4654	